

# —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—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### 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계획이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 통보됨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부칙에 환경사업소 설치 기한을 한시적으로 명기(제2조)  
『 구미시환경사업소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존속한다.  
이 기간전에 민간위탁시에는 위탁시점까지 존속한다. 』

### 4. 참고사항

- 구미시시설관리공단조례, 지방공기업법 제2조
-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

### 5. 검토의견

- 구미시청소년수련소('99.12.31까지),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(2001. 7.31까지)에 이어서 환경사업소를 한시기구로서 조례에 명기하여 시설물 관리를 민간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과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.
-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민간위탁시 시설물이나 수질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